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99
----------	-----

2024. 10. 18.(금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0일

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교통철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11조)
-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12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정법주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2023. 5. 16. 법률 제194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. 11. 17. 시행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 개정 내용의 법 적합성 및 타당성

- 조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안 제11조는 조문명과 내용을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’에서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’로 수정함. 안 제11조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취지 및 설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고, 안 제12조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양 조문이 명확하게 구분됨.
  - 안 제12조의 조문명을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’에서 ‘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’으로 하고, 안 제12조제1항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상위법령의 운영 기준에 따라 수정함.

- 충북은 도내 시·군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되, 상위법령(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나목)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△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, △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, △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업무를 규정함.
- 또한, 상위법령(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2호)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`24. 8. 16. ~ `24. 9. 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#### 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 개정 이후 원활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도내 시·군 및 다른 지역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,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의견 수렴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#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699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11조)
-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12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”을“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설치·운영한다”를 “설치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)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
2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3.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
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사항

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도지사는 시·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위하여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설치한다.</p>
<p>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시·군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</li> <li>2.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시·군간 정보협력 및 지원</li> <li>3.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</li> <li>4. 타 시·도 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</li> <li>5.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p>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)</p> <p>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</li> <li>2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</li> <li>3.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</li> <li>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</li> <li>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.</p>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

제14조의6(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11. 16.>

1.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

가. 이동지원센터의 경우: 다음의 업무

- 1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
- 2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
- 3)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
- 4)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- 5)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- 6)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
- 7) 출발지·도착지·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
- 8)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
- 9)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

나.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: 다음의 업무

1)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

2)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)·5) 및 6)의 업무.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.

3)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)부터 9)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

4)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

2.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. 다만,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